

FTA 100% 활용하기

데이터 경제 속 한·중 FTA 바라보기

백필호 | 한국IT비즈니스진흥협회 신기술융합부 본부장
한국전자거래학회 산학이사
한양대학교 컴퓨터소프트웨어학부 겸임교수

데이터 경제 속 한·중 FTA 바라보기



백필호

한국IT비즈니스진흥협회 신기술융합부 본부장
한국전자거래학회 산학이사
한양대학교 컴퓨터소프트웨어학부 겸임교수



포스트 코로나19(Post COVID-19) 시대에는 데이터 관리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는 데이터 일상 및 경제를 맞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기관·기업에서 수집, 분류, 관리된 데이터를 산업에 활용하여 기술, 서비스 및 비즈니스모델의 부가가치를 높이고 데이터로 인해 괄목할 만한 성장을 이루는 기업들이 많아지게 될 것이다.

데이터를 활용하기 전에 선행되어야 할 것은 수집, 분류, 관리이다. IT비즈니스와 연계해보면 기업에서 수집, 분류, 관리되는 데이터를 컴퓨터 기계학습을 위한 데이터로 가공하는 것을 데이터 라벨링 이라고 한다.

데이터가 라벨링 되었다는 것은 IT비즈니스에 적용할 준비가 되었다는 것이다. 디지털전환 시대 IT비즈니스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현재 오프라인에서 어떤 데이터들이 어떻게 정리되고 있는가? 이다.

기업의 경영 구조에서는 어떤 데이터가 규칙, 규정에 의해서 수집, 분류, 관리되고 있을까? 그리고 데이터가 라벨링이 가능하게 데이터가 처리되고 있을까?

우리 주위를 둘러보면 전 산업 분야에 데이터가 있다. 필자는 이번에 FTA에서의 물품의 품목분류와 원산지 관리 데이터에 주목하고 싶다.

FTA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 바로 품목분류와 원산지 관리이다. 특히 더욱 중요한 것은 물품의 품목분류인데, 품목분류가 제대로 되어야 FTA 원산지 관리 및 활용이 가능한 것이다.

특히 우리나라와 교역량이 가장 많은 국가 중 하나인 중국과의 FTA에서 품목분류 사전판정제도, 해외통관 애로사항, 통관제도 등의 내용 속에서 수집, 분류 및 관리되고 있는 데이터를 짚어보고 활용전략을 생각해 보고자한다.

1. 품목분류 사전판정제도

중국은 해관법 제43조에 따라 세관은 수출입업자가 제출한 서면신청에 따라 수출입하려는 물품을 사전에 품목분류 하는 등 행정상 결정할 수 있는 품목분류 사전판정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사전판정제도 시행 이전에 중국은 사전판정제도는 운영하고 있지 않았으며, 유사한 효력을 가진 제도는 해관의 품목분류 사전심사, 원산지 사전심사, 가격 사전심사제도(이하 3종 사전심사)와 행정사전판정 제도가 있었다.¹⁾

[표 1] 사전판정제도와 3종 사전심사의 공통점 및 차이점

구분	공통점	차이점
사전판정제도	- 해관이 신청인의 신청을 받아 화물의 실제 수출입 전에 곧 시행될 수출입 활동과 관련된 해관 업무에 대해 결정을 내린다는 점	- (적용범위) 전국해관에서 공통 적용 - (효력지속성) 유효기간 3년, 유효기간 내 신청인의 동일한 화물 수출입에 대해 적용 가능
3종 사전심사	- 법률상 모두 해관의 구체적인 행정행위이며 당사자는 이의가 있을 경우 행정심의를 신청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	- (적용범위) 해당 사전심사 결정을 내린 직속 해관에서만 적용 - (효력지속성) 지속성이 없으며 당사자가 신청한 해당 화물에만 적용 가능

자료: 中 伦律师事务所 자료 KOTRA 광저우무역관 자료 재인용

사전판정제도는 해관이 신청인의 신청을 받아 화물의 실제 수출입 전에 곧 시행될 수출입 활동과 관련된 해관업무에 결정을 내리며, 유효기간은 3년으로 유효기간내에 신청인의 동일한 화물 수출입에 대해 적용이 가능하다.

사전판정제도 신청은 실제 수출입 무역활동과 관련이

있어야 하며, 신청시 곧 시행될 수출입 무역활동과 관련이 있다는 점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의향서 등을 포함한 무역거래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특히, 실제 수출입 업무를 진행하기 위해서가 아닌 일반 문의 업무는 사전판정제도를 활용 할 수 없다.

1) 광저우해관 및 KOTRA 광저우무역관 자료(中 해관 사전판정제도 활용 방법)

2. 중국 관세제도 및 한-중 FTA에서 빈번히 발생하는 오류

1) 중국의 관세제도

1992년 중국은 '상품명칭 및 코드 제도'(商品名稱及編碼協調制度)를 바탕으로 관세 품목에 8자리 코드를 부여했다. 1996년, 2002년, 2007년, 2012년 세계 해관조직원협회와 개정을 시행하였다.

2015년 4월 1일부로 세계해관조직원 수정에 따라 중국의 '상품명칭 및 코드제도 목록'(進出口稅則商品及品目註釋)을 수정한 뒤 발효했다.

중국에서 무역량이 비교적 크거나 증가율이 빠른 편인 상품에 대해서는 목록에 다시 추가했는데 8자리 HS코드는 2001년 7,111개에서 2020년 8,549개 까지 증가했다.

또한, 관세율을 확인하려면 해당 연도의 "중화인민공화국 해관수출입 세칙(稅則)"에서 상품의 HS CODE와 상품명칭, MFN세율(최혜국세율) 및 수입증치세를 확인할 수 있다.



대중국 수출품목의 HS CODE와 상품명칭을 확인한 후 해당 품목의 최혜국 세율, 잠정세율, 한-중 FTA 세율과 아시아-태평양 무역협정(APTA) 를 비교하여 가장 낮은 관세율을 적용하도록 해야 한다.

관세율을 확인할 때 사전에 통관 시 필요한 서류나 절차를 의미하는 “감독관리조건”도 함께 확인하고 필요한 자료는 미리 준비해야 한다.

2) 한-중 FTA에서 빈번히 발생하는 오류

한-중 FTA를 기업에서 활용할 때 자주 발생하는 오류는 중국에서 우리나라로 수입하는 물품이 원산지 증명서상 세번과 수입신고서의 세번이 상이한 경우이다.

이러한 경우 수입국에서 수출국의 HS CODE와 상이한 HS CODE를 원산지증명서에 기재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경우의 원산지증명서 발급방법에 대하여 관세청에서 업무처리 지침을 마련하고 있다.

관세청 「품목분류 해석 상이 등에 대한 업무처리 지침」에 따르면, 협정상대국의 HS 번호를 확인할 수 있는 공식서류를 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에 제출할 경우 협정상대국의 HS 번호를 기재하여 원산지증명서를 발급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협정상대국의 HS 번호를 확인할 수 있는 공식서류란 당해품목에 대한 협정상대국 정부의 공식적 의견을 말한다.

해당서류는 ① 수입신고필증 ② 품목번호 확인서 ③ 사전심사결정서(advance ruling) ④ 협정상대국 관세·품목분류표에 명확하게 규정된 품목임을 증명하는 서류 ⑤ 기타 세관장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의미한다.

관세청 업무지침에서는 위에서 언급한 협정상대국의 HS번호를 확인할 수 있는 공식서류를 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세관 또는 상공회의소)에 제출할 경우 협정상대국의 HS번호를 기재하여 원산지증명서의 발급이 가능하도록 설명하고 있다.



3. 중국 통관제도

1) 개요

통관은 수출입 운송수단의 경영자, 송·수화인 및 그 대리인, 화물 소유자가 세관에 수출입 내역을 신고한 후, 세관이 신고서류 심사 및 수출입화물과 운송수단의 검사, 관세 징수 및 수출입 승인 등 일련의 절차를 진행하는 것을 말한다.

‘중화인민공화국해관법(中華人民共和國海關法, 이하 ‘海關法’)에 근거해 중국은 대외개방 항구 및 세관의 감독관리가 집중된 지역에 세관을 설치하고 있으며 수출입 운송수단 및 화물은 반드시 세관 설립지에서 수입 또는 수출하도록 하고 있다.

특수상황의 발생 시 국무원 혹은 그 수권 기관의 비준을 거쳐 세관의 미설립 지역에서 임시로 수입 혹은 수출이 가능하나 반드시 세관수속을 거쳐야 한다.

2) 수출입 화물 통관절차

중국의 수출입 화물 통관절차 단계는 일반적으로 세관 신고 → 화물검사 → 관세징수 → 통관, 반·출입 등 4단계를 거친다.

가공무역방식의 수출입화물 및 관세의 감면 혹은 추후 납부 대상 수출입화물 및 화물인출 후 일정 기간 내 세관감독이 필요한 수출입화물은 신고 → 화물검사 → 관세징수 → 통관, 반·출입 → 통관종료 등 5단계의 통관 절차를 거쳐야 한다.²⁾



2) 코트라 국가·지역정보 중국 통관환경

4. 데이터 관점에서 본 한-중 FTA

앞서 언급한 한-중 FTA에서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인 품목분류 사전판정제도, 해외통관 애로사항, 통관제도 등을 절차 안에서 뿐만 아니라 FTA안에서 수집, 분류, 관리하고, 이러한 내용을 데이터 라벨링될 부분에 접목하면 데이터 경제 속에 또 다른 IT비즈니스를 발견하게 될 것이다.

가까운 미래에는 분명 관리된 데이터들이 데이터 라벨링을 통해 기계학습에 적용되어 인공지능 기술이 FTA에 적용될 것이다.

FTA 행정 절차에 데이터 중심의 고도화된 인공지능, 블록체인, 클라우드 기술이 활용될 것이고 그 중심에 우리나라 수출입 기업들이 있다.

지금부터라도 FTA 제도 속에서 수집, 분류, 관리되고 있는 데이터를 활용하는 시도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코로나19로 어려운 상황이지만 FTA를 중심으로 우리나라 경제를 책임지고 있는 수출입 기업들을 응원한다.

5. FTA 데이터 경제 시대를 준비하자.

데이터가 제품, 서비스처럼 거래되는 FTA 데이터 경제 시대를 준비하자.

정부·기관·기업을 넘어 개인이 수집, 분류, 관리한 데이터가 거래되기 시작했다. 데이터 형태(음성, 언어, 시각 등)에 따라 원가에 차이가 있겠지만 데이터를 공동으로 제작, 공유하고 앞으로는 입찰, 경매도 이루어 질 것이라고 필자는 예상해 본다.

이제는 데이터 경제를 FTA에도 활용해 보자. 디지털 전환 시대는 데이터 경제이며 데이터 경제의 발전이 많은 것들을 빠르게 변화시킬 것이기 때문에 데이터를 다루는 사회적 책임이 더욱 강조되는 때이다.

더불어 FTA 데이터를 라벨링하고 기업이 활용할 수 있는 FTA 관련 데이터들을 서로 연결시켜 기업의 새로운 원동력으로 발전시키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한 때이다.

